

2024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4. 1. 1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노+경+일) x 율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, 전기·통신, 소방·기타			중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2	12.2	5.8	5.8	5억 미만	6.0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
	7~12개월 (365일)	12.2	12.2	5.7	5.7									건축공사	0.07	비계·구조물해체공사	0.68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2.0	12.0	6.0	6.0												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	구분		요율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7	11.7	5.8	5.8	5억 - 30억 미만	6.0	5.5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5.8	5.8									산업·설비공사	0.16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종)	0.32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1.5	11.5	6.1	6.1													50억 미만		구분		요율	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5	11.5	5.9	5.9	50억 - 100억 미만	5.5	5.0	12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5	11.5	5.8	5.8									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	0.16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3	11.3	6.1	6.1											50억 ~ 500억 미만		구분		요율		기초액(천원)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1	11.1	5.6	5.6	300억 - 1000억 미만	5.0	4.5	10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1	11.1	5.6	5.6									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	0.10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
	13~36개월 (1095일)	10.9	10.9	5.9	5.9											50억 이상		구분		요율		기초액(천원)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 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1000억 이상		4.5	9.0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			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									
[산재보험료]		[환경보전비]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					
(노) x 3.56		(직접공사비) x 율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구분				공사규모(추정가격)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고용보험료]		구분				구분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(노) x 율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		50억 미만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1등급] 1200억 이상		지하철		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2등급] 800억 ~ 1200억 미만		철도		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3등급] 520억 ~ 800억 미만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4등급] 340억 ~ 520억 미만		형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		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전기)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5등급] 210억 ~ 340억 미만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				터키·대안공사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6등급] 130억 ~ 210억 미만		댐		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7등급] 고시금액 ~ 130억 미만		택지개발		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7등급 미만		기타 토목(하천 등)		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,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용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지역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주택(재개발, 재건축)				수수료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간강보험료]		주택(신축)				70억 미만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			70억 이상~120억미만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연금보험료]		(직노) x 3.545				(간강보험료) x 12.95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(직노) x 4.5		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[퇴직공제부금비]		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요양방지시설 설치,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			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(직노) x 2.3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를 기준으로 함)		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를 기준으로 함)				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를 기준으로 함)				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를 기준으로 함)				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를 기준으로 함)									

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